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안덕근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범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7. 22. ~ 9. 2.)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

5호에 따른 수직농장·식물공장(건축물 형태의 시설로 한정한다)으

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·운영하는 사업

가. 인공 광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

나.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, 자동제어시스템(양

액, 관수,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)을 갖추는 것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① ~ ④ (생략)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·식물공장(건축물 형태의 시설로 한정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·운영하는 사업 가. 인공 광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나.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, 자동제어

8. ~ 13. (생략)	<u>시스템(양액, 관수,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</u> 8. ~ 13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	
연락처	(044) 203 - 4409